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2021.12.9.)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목 차

◆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I	제안 개요	1
II	2022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III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6
	① 세입·세출 총괄 현황	
	② 일반회계 세입현황	
	③ 일반회계 세출현황	
IV	2022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6
V	검토결과(검토의견)	17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21-122
번호	21-123

2021. 12. 9.
전문위원 신준호

I. 제안 개요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보건소)
- 나. 제 출 일 : 2021. 11. 16.
- 다. 회 부 일 : 2021. 11. 17.

2.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II. 2022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제출된 마포구 전체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81% 증가된 총 7,636억 원이며, 재정자립도¹⁾는 32.56%로 전년대비 0.53% 증가 했으며, 재정자주도²⁾는 50.94%로 전년대비 2.3% 높아졌음.
 - 일반회계는 7,074억 원으로 전년대비 8.61% 증가함.
 - 특별회계는 561억 원으로 전년대비 △33.3% 감소함.
- 기금운용계획안은 551억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원이 감소함

1) 재정자립도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총규모

2) 재정자주도 = 자체재원 + 보조금 제외한 의존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일반회계 총규모

가. 2022년도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22 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63,613,887	735,557,403	28,056,484	3.81%
일반회계	707,458,921	651,363,390	56,095,531	8.61%
특별회계	56,154,966	84,194,013	△28,039,047	△33.30%
의료급여기금	547,290	485,200	62,090	12.80%
마포농수산물시장	4,502,089	7,503,649	△3,001,560	△40.00%
주차장	40,846,528	68,377,699	△27,531,171	△40.2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855,059	6,577,465	2,277,594	34.63%
건축안전	1,404,000	1,250,000	154,000	12.32%

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말 조성액 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②	증 감 ③=①-②
		수입④	지출⑤		
합 계	55,171,326	15,910,570	20,176,963	59,437,719	△4,266,393
1 재난관리기금	6,294,760	5,616,275	635,671	1,314,156	4,980,604
2 남북교류협력기금	465,316	104,515	104,000	464,801	515
3 중소기업육성기금	1,851,837	2,750,242	4,000,420	3,102,015	△1,250,178
4 자활기금	1,643,578	43,250	92,084	1,692,412	△48,834
5 노인복지기금	1,330,050	20,556	20,420	1,329,914	136
6 양성평등기금	2,162,334	40,000	40,000	2,162,334	0
7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900,282	19,935	30,420	910,767	△10,485
8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915,120	109,482	182,621	988,259	△73,139
9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6,870,661	3,100,078	2,082,520	5,853,103	1,017,558
10 옥외광고발전기금	894,006	420,000	797,300	1,271,306	△377,300
11 도로굴착복구기금	2,132,926	884,450	1,103,540	2,352,016	△219,090
12 식품진흥기금	2,191,889	169,371	619,565	2,642,083	△450,194
13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822,568	469,654	3,846,260	4,199,174	△3,376,606
14 공유재산관리기금	26,490,155	1,997,000	6,490,022	30,983,177	△4,493,022
15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205,844	165,762	132,120	172,202	33,642

2. 세입·세출예산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07,458,921	651,363,390	56,095,531	8.61%
지방세수입	174,442,775	154,083,611	20,359,164	13.21%
세외수입	55,911,019	54,525,585	1,385,434	2.54%
지방교부세	22,223,000	17,047,000	5,176,000	30.36%
조정교부금등	107,784,484	91,192,869	16,591,615	18.19%
보조금	306,145,133	288,708,385	17,436,748	6.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952,510	45,805,940	△4,853,430	△10.60%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56,154,966	100%	84,194,013	100%	△28,039,047	△33.30%
세외수입	22,578,374	40.21%	24,790,092	29.44%	△2,211,718	△8.92%
경상적세외수입	15,606,957	27.79%	17,218,806	20.45%	△1,611,849	△9.36%
임시적세외수입	3,210,457	5.72%	3,097,686	3.68%	112,771	3.6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60,960	6.70%	4,473,600	5.31%	△712,640	△15.93%
보조금	1,210,190	2.16%	699,300	0.83%	510,890	73.06%
국고보조금등	936,545	1.67%	456,700	0.54%	479,845	105.07%
시·도비보조금등	273,645	0.49%	242,600	0.29%	31,045	12.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366,402	57.64%	58,704,621	69.73%	△26,338,219	△44.87%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74억5,892만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513억6,339만원 보다 8.61%, 560억9,553만1천원 증액 편성됨.

- 지방세 수입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3.21% 증가된 1,744억4,277만5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징수 실적 증가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전년대비 30.36% 증가된 222억2,300만원임.
- 세외수입은 지방세 징수 실적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등으로 전년대비 2.54% 소폭 증가된 559억1,101만9천원임.
- 아울러, 보조금은 국·시비 매칭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6.04% 증가된 3,061억4,513만3천원임.
- 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21년도 예산보다 △33.30%, △280억3,904만7천원 감액된 561억5,496만6천원을 편성요청함.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92% 감소된 225억7,837만4천원이고,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발전소지원사업의 예산증가로 전년대비 73.06% 증가된 12억1,019만원임.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707,458,921	100.00%	651,363,390	100.00%	56,095,531	8.61%
인건비	111,425,052	15.75%	106,603,938	16.37%	4,821,114	4.52%
물건비	46,099,488	6.52%	45,073,357	6.92%	1,026,131	2.28%
경상이전	479,771,051	67.82%	438,873,110	67.38%	40,897,941	9.32%
자본지출	52,843,330	7.47%	52,258,903	8.02%	584,427	1.12%
내부거래	6,000,000	0.85%	2,717,919	0.42%	3,282,081	120.76%
예비비및기타	11,320,000	1.60%	5,836,163	0.90%	5,483,837	93.96%

-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7,636억1,388만7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21년도 예산안 대비 8.61%, 560억9,553만1천원 증액된 7,074억5,892만1천원으로 요청하고

라.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6,154,966	100.00%	84,194,013	100.00%	△28,039,047	△33.30%
인건비	3,109,970	5.54%	3,078,628	3.66%	31,342	1.02%
물건비	2,378,598	4.24%	2,413,424	2.87%	△34,826	△1.44%
경상이전	14,771,539	26.30%	15,603,497	18.53%	△831,958	△5.33%
자본지출	12,967,596	23.09%	26,965,861	32.03%	△13,998,265	△51.91%
융자및출자	500	0.00%	500	0.00%	0	0.00%
예비비및기타	22,926,763	40.83%	36,132,103	42.92%	△13,205,340	△36.55%

- 세출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행정운영경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예산이 확대되었음.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관련 사업비가 증가되고, 시비 감축 사업 및 신규 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의무지출이 증가함.

Ⅲ.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1. 세입·세출 총괄현황

가. 세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6,539,999	12,656,069	3,883,930	30.69
일반회계	16,539,999	12,656,069	3,883,930	30.69
특별회계	해당없음			

-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165억3,999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6억5,606만9천원 대비 30.69%, 38억8,393만원 증가된 규모로서 마포구 전체 세입 예산의 2.16%에 해당하며,

나. 세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7,270,508	20,250,832	7,019,676	34.66
일반회계	27,270,508	20,250,832	7,019,676	34.66
특별회계	해당없음			

- 세출예산은 272억7,05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2억5,083만2천원 대비 70억1,967만6천원, 34.66% 증가하여 마포구 전체 세출예산의 3.57%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현황

가.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6,539,999	12,656,069	3,883,930	30.69
세외수입	391,535	463,347	△71,812	△15.50
경상적세외수입	293,895	364,007	△70,112	△19.26
사용료수입	158,499	102,826	55,673	54.14
수수료수입	135,396	261,181	△125,785	△48.1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7,640	99,340	△1,700	△1.71
과징금	27,140	21,540	5,600	26.00
과태료	70,500	77,800	△7,300	△9.38
보조금	16,148,464	12,192,722	3,955,742	32.44
국고보조금등	6,226,934	5,224,136	1,002,798	19.20
국고보조금등	6,226,934	5,224,136	1,002,798	19.20
시·도비보조금등	9,921,530	6,968,586	2,952,944	42.38
시·도비보조금등	9,921,530	6,968,586	2,952,944	42.38

-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수수료, 의료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로 구분되며, 전년대비 △15.5% , △7,181만2천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운영에 따른 보건소 운영 축소로 인해 수수료 수입 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보조금은 161억4,846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32.44%, 39억5,574만2천원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가내시액 증가에 따른 것임.

나.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총 계	16,539,999	12,656,069	3,883,930
보건행정과	2,091,887	1,946,415	145,472
위생과	405,680	399,080	6,600
건강증진과	13,407,351	9,945,293	3,462,058
의약과	635,081	365,281	269,800

- 보건행정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1억4,547만 2천원 증액된 20억9,188만7천원임. 세입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도비보조금등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보건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022년 보조금 가내시 반영으로 인한 것임.
- 위생과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660만원 증액된 4억 568만원임.
- 건강증진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34억6,205만8천원이 증가한 134억735만1천원이 편성됨. 주요 증가 내역은 신규편성된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사업 국고보조금 18억7,105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21억8,289만6천원의 반영으로 인한 것임.
- 의약과는 기타사용료, 과징금,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억6,980만원 증가한 6억3,508만1천원임. 주요 증가 내역은 관리비수입(아현문화건강센터)의 5,567만3천원, 보조금 기금의 ‘재활보건사업’ 1,603만6천원, 시도비보조금의 ‘인력운영비(건강돌봄서비스) 1억2,266만5천원, 건강돌봄서비스사업 5,883만6천원이 증액 반영된 것임.

3. 일반회계 세출현황

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
총계	27,270,508	100.00	20,250,832	100.00	7,019,676	34.66
인건비	4,419,063	16.20	3,800,879	18.77	618,184	16.26
물건비	1,842,057	6.75	1,623,669	8.02	218,388	13.45
일반운영비	1,514,717	5.55	1,445,169	7.14	69,548	4.81
여비	204,180	0.75	52,800	0.26	151,380	286.70
업무추진비	69,760	0.26	72,300	0.36	△2,540	△3.51
재료비	53,400	0.20	53,400	0.26	0	0.00
경상이전	20,962,588	76.87	14,805,847	73.11	6,156,741	41.58
일반보전금	635,840	2.33	695,270	3.43	△59,430	△8.55
포상금	54,114	0.20	3,880	0.02	50,234	1,294.69
연금부담금등	207,882	0.76	166,641	0.82	41,241	24.75
배상금등	1,000	0.00	1,000	0.00	0	0.00
민간이전	18,541,090	67.99	12,442,987	61.44	6,098,103	49.01
자치단체등이전	1,047,707	3.84	1,071,425	5.29	△23,718	△2.21
전출금	474,955	1.74	424,644	2.10	50,311	11.85
자본지출	46,800	0.17	20,437	0.10	26,363	129.00
자산취득비	46,800	0.17	20,437	0.10	26,363	129.00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2억 7,050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 1,967만 6천원, 34.66%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은 물건비 여비 286.70%(여비 편성부서 변경: 총무과→ 각 부서), 경상이전 포상금 1,294.69%(기존 인건비 편성목 조정: 명절 격려금, 생일축하격려금 포상금으로 편성), 자산취득비 129%가 증가함.

나.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7,270,508	100.00	20,250,832	100.00	7,019,676	34.66
보건행정과	4,027,228	14.77	3,207,139	15.84	820,089	25.57
위생과	702,025	2.57	637,626	3.15	64,399	10.10
건강증진과	20,526,178	75.27	14,555,937	71.88	5,970,241	41.02
의약과	2,015,077	7.39	1,850,130	9.14	164,947	8.92

다.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1) 보건행정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보건행정과	4,027,228	3,207,139	820,089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3,856,107	3,110,299	745,808
보건소 기능 강화	2,574,422	2,216,700	357,722
통합민원서비스	105,063	96,585	8,478
암환자 의료비 지원	279,000	307,308	△28,308
건강도시 조성	8,680	8,680	0
암조기검진사업	314,000	399,868	△85,868
정신보건사업	761,706	762,739	△1,03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60,000	500,000	60,000
지역사회건강조사	69,932	69,920	12
통합건강증진사업	10,000	10,000	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1,600	61,600	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35,489	0	35,489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48,184	0	148,184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신규)	200,000	0	200,000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신규)	20,768	0	20,768
감염병 관리	1,281,685	893,599	388,086
감염병예방관리	580,279	190,226	390,053
방역소독	232,728	234,556	△1,828
에이즈예방관리	220,845	220,845	0
주요감염병표본감시	920	920	0
국가결핵관리사업	239,523	238,162	1,361
결핵검진사업	7,390	7,390	0
행정운영경비	171,121	96,840	74,281
인력운영비(보건소장실)	35,542	0	35,542
기본경비	135,579	96,840	38,739

- 보건행정과는 40억2,722만8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8억2,008만9천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14.7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증액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 지원사업비’ 6천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3,548만9천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억4,818만4천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원,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076만8천원이 있으며, 보건소 키오스크 유지보수비 신규편성에 833만8천원과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 3억9,005만3천원을 증액편성함.

2) 위생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위 생 과	702,025	637,626	64,399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30,106	28,106	2,000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30,106	28,106	2,000
식품공중위생업신고 · 관리	18,506	16,506	2,000
위생업소 지도점검	5,310	5,310	0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6,290	6,290	0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	557,388	557,254	134
식품위생 관리	557,388	557,254	134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31,168	31,654	△486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 운영	526,220	525,600	620
행정운영경비	114,531	52,266	62,265
기본경비	114,531	52,266	62,265
기본경비	114,531	52,266	62,265

- 위생과는 7억202만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6,439만9천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2.5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증액 내역은 코로나19 관련 홍보 및 방역활동 증가로 ‘식품공중위생업신고 · 관리’ 2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센

터 재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 62만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6,22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함.

3) 건강증진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건강증진과	20,526,178	14,555,937	5,970,241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17,972,079	12,360,396	5,611,683
생활건강관리	1,170,325	1,216,245	△45,92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26,182	250,000	△23,818
건강증진사업	73,654	71,752	1,902
영양플러스사업	243,948	239,667	4,281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교육	2,940	2,940	0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11,670	208,800	2,87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50,606	247,998	2,608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77,192	76,950	242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38,177	58,569	△20,392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21,996	35,609	△13,613
싱겁게 먹는 배움터	22,000	22,000	0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1,960	1,960	0
방문보건사업	1,888,090	1,970,660	△82,570
재가암환자관리	12,000	12,000	0
마을건강센터 운영	11,168	30,368	△19,20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368,000	1,280,000	88,000
국가치매치료관리비	103,960	103,960	0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	43,400	54,200	△10,800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139,394	84,560	54,834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4,800	5,000	△200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05,368	400,572	△195,204
모자보건관리	14,913,664	9,173,491	5,740,173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26,780	26,780	0
국가예방접종 실시	5,162,862	4,993,829	169,033
자체예방접종사업	124,373	129,910	△5,537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31,489	48,992	△17,503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16,000	21,000	△5,0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8,820	7,000	1,820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	2,000	2,00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960	19,160	11,80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8,980	29,500	19,480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3,380	2,840	540
난임부부 지원	400,202	295,752	104,45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8,034	3,277	4,757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0	1,600	80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33,611	35,340	△1,7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490,180	1,951,960	△461,78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31,971	423,100	8,871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12,080	15,300	△3,220
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	27,497	19,520	7,977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322,428	732,145	△409,717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34,612	274,841	△40,229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	67,462	100,000	△32,538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0,537	39,645	30,892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신규)	120,160	0	120,160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신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236,846	0	6,236,846
행정운영경비	2,554,099	2,195,541	358,558
인력운영비(건강증진과)	2,447,739	2,109,268	338,471
인력운영비	264,174	264,224	△50
인력운영비(통합방문간호사)	927,823	725,700	202,123
인력운영비(서울아기건강첫걸음)	236,834	198,973	37,861
인력운영비(찾동방문간호사)	1,018,908	920,371	98,537
기본경비(건강증진과)	106,360	86,273	20,087
기본경비	106,360	86,273	20,087

- 건강증진과는 205억2,617만8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9억7,024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75.2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증액 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8,800만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5,483만4천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6,903만3천원, ‘난임

부부 지원' 1억445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의 근로자 인건비 1억2,016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2억3,684만6천원 증액 편성함.

- 주요 감액 내역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381만8천원,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2,039만2천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1억9,520만4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억6,178만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4억971만7천원 감액 편성함.

4) 의약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의약과	2,015,077	1,850,130	164,947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	1,473,890	1,463,043	10,847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1,043,654	981,827	61,827
아현문화건강센터	476,955	428,644	48,311
아현건강증진센터(지소)	82,992	97,480	△14,48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87,300	87,300	0
의료기관 관리	7,247	7,247	0
의약품 조제·투약	4,980	4,980	0
치아건강관리	129,778	128,555	1,223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	60,708	94,286	△33,578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80,040	68,000	12,040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0,600	12,260	△1,660
서강보건지소운영	24,605	53,075	△28,470
건강돌봄서비스(신규)	78,449	0	78,449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60,606	392,836	△32,230
건강검진	18,617	19,357	△740
검사 및 검진사업	196,837	233,183	△36,34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60,000	60,000	0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8,190	8,190	0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	2,880	2,880	0
재활보건사업	74,082	32,268	41,814
응급의료관리	69,630	88,380	△18,750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60,450	79,200	△18,75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9,180	9,180	0
행정운영경비	541,187	387,087	154,100
인력운영비	441,985	312,725	129,260
인력운영비(심폐소생술 교육)	38,261	37,301	960
인력운영비(아현건강증진센터)	158,897	148,363	10,534
인력운영비(서강보건지소)	40,046	38,501	1,545
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건강돌봄서비스)	204,781	88,560	116,221
기본경비	99,202	74,362	24,840
기본경비	99,202	74,362	24,840

- 의약과는 20억1,507만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6,494만7천원, 8.91%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7.39%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증가 내역은 ‘아현문화건강센터’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4,831만1천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1,204만원, ‘건강돌봄서비스’ 7,844만9천원, ‘재활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로 4,181만4천원, ‘인력운영비’ 1억2,926만원 증액됨.
- 주요 감소 내역은 예산감축 및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축소로 ‘아현건강증진센터(지소)’ △1,448만8천원 및 ‘서강보건지소 운영’ △2,847만원,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 △3,357만8천원, ‘검사 및 검진사업’ △3,634만6천원, ‘생명안전응급처치교육’ △1,875만원이 감액됨.

IV. 2022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㉑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㉓ = ㉒ + ㉑	비 고
	수입 ㉒	지출 ㉔	증감 ㉒ = ㉔ - ㉓		
2,642,083	169,371	619,565	△450,194	2,191,889	

나. 자금운용(수입·지출)계획

1)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수 입 합 계	2,811,454	3,025,802	△214,348
세외수입	116,039	148,717	△32,678
경상적세외수입	116,039	148,717	△32,678
징수교부금수입	93,354	120,000	△26,646
이자수입	22,685	28,717	△6,03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95,415	2,877,085	△181,670
보전수입등	2,695,415	2,877,085	△181,670
융자금원금수입	53,332	197,749	△144,417
예치금회수	2,642,083	2,679,336	△37,253

2)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지 출 합 계	2,811,454	3,025,802	△214,348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619,565	612,125	7,440
식품진흥활동(식품진흥기금)	619,565	612,125	7,440
식품진흥기금 운용	619,565	612,125	7,440
재무활동(위생과)	2,191,889	2,413,677	△221,788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2,191,889	2,413,677	△221,788
여유자금예치	2,191,889	2,413,677	△221,788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금으로서 재원은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융자금원금, 수입예치금회수 등으로 조성되며,
 - 주요 지출은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사업에 6억1,956만5천원, ‘여유자금예치’ 21억9,188만9천원 편성됨.
- 주요 증가 지출사업은 위생교육 안내 우편물 발송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에 201만원과, ‘모범음식점영업주 전통음식점 선진지 견학’에 543만원 증액됨.

V. 검토결과

1. 검토의견

- 2022년도 마포구 세입예산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 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지방세 징수 실적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등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가 전망됨. 보조금은 국·시비 매칭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지속적 성장의 불투명으로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함.
- 세출예산은 시비 감축 사업 및 신규 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 인건비 및 공공요금,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소폭 상승,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각종 재난 및 안

전관리 예산 확대와 공약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관련 사업비의 증액으로 발생함.

- 202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165억3,999만9천원으로 구 세입예산의 2.17%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26억5,606만9천원 대비 30.69%인 38억8,393만원이 증액되었음.

재원별로 보면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5,567만3천원 증가한 1억5,849만9천원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48.16%, △1억2,578만5천원 감소한 1억3,539만6천원임. 이는 마포종합재가센터 임대사용료 발생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운영 축소로 각 증감 편성됨.

- 국·시비보조금은 보건소 세입예산의 97.63%(161억4,846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32.44%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으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됨.
- 보건소 2022년 세출예산은 272억7,05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2억5,083만2천원 대비 34.66%인 70억1,96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고, 동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인력운영비(통합방문간호사, 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의 예산이 증가하였음.
- 보건소는 타 소관 국에 비해 국·시비보조금 비율이 높은 사업이 대부분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비 부담은 구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과 주민편의를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비율 인하는 물론, 타당성이 낮은 매칭 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보건사업이 구민 모두에게 전달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 홍보계획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을 강화하고 구민의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계획은 과징금의 감소와 용자금 원금과 예치금 원금 수입 등에 따라 감소하였음.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위생시설 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육성, 시설개선자금의 용자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금은 예산의 변경사용이 용이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의 목적사업이 다양한 관계와 정치적인 우선순위에 따른 기금의 사용이 결정되는 등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할 것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보건소 신규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편성사유
보건 행정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00,000	0	200,000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주도적으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6871 (2021.10.29.)]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0,768	0	20,768	자살현황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자 함.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6764 (2021.10.28.)]
건강 증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120,160	0	120,160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에 따른 콜센터 인건비 반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6,236,846	0	6,236,846	2022년부터 코로나19 접종 시행비의 국비-지방비 공동분담에 따른 가내시 반영
의약과	건강돌봄서비스	78,449	0	78,449	2022년 가내시확정에 따른 본예산 편성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